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최종개정 2023.6.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장학규정(학사과정)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장학금 운영

- 제2조(지급계획 수립·통보) ①기획조정실장은 매 학년도 개시 전에 장학예산을 책정하여 학생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변경 2006.1.5, 2022.3.1.)
 - ②학생처장은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단과대학장 및 관련부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변경 2022.3.1.)
 - 1.장학종별 인원 배정표
 - 2.연속장학금 추천대상자 명단
 - 3.기타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자료
 - ③단과대학장은 계열(학)부장 또는 학과주임교수에게 장학금 지급계획에 명시된 장학종별 배정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인원배정)** ①장학대상 인원은 입학정원(또는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변경 2005.5.11)
 - ②백마장학금 대상인원은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 1.인원배정은 입학정원(또는 재학생 수)을 기준으로 한다.(2, 3, 4학년의 계열에서 분리된 학과는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변경 2005.5.11)
 - 2.계열, 학부(과), 전공별 입학정원(또는 재학생수)을 50명 단위로 백마1종, 2종을 각각 1명씩 배정한다. 다만, 잔여인원이 25명을 초과할 경우 백마1종, 2종을 각각 1명씩 추가로 배정한다.
 - 3.계열, 학부(과), 전공별 입학정원(또는 재학생수)이 15명 이하일 경우에는 백마 1종에 한하여 1명을 배정한다. 다만, 재학생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변경 2005.11.1)

제 3 장 장학대상자 추천

- 제4조(추천절차) ①계열(학)부장 또는 학과주임교수는 별표1 및 별표2의 장학생 선정기준에 따라서류심사, 개별 면접, 가정형편 및 학부(과) 자체 선발기준 등을 고려하여 전임교수회의에서 장학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과 추천서를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20.7.1.)
 - ②단과대학장은 계열 또는 학부(과)에서 선정된 장학대상자에 대하여 장학종별로 명단을 작

성하여 학생처장에게 일괄 추천하여야 한다.(변경 2022.3.1.)

- 제5조(신입생 추천) 입학처장은 매 학년도 신입생 합격자 발표와 함께 설립자장학금, 신입생성 적우수장학금, 외국인장학금, 명지사랑장학금, 세계화장학금, 학술활동장려장학금 대상자의 명단을 학생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변경 2005.1.11, 2006.1.5, 2008.9.1, 2009.11.2., 2010.3.1., 2022.3.1.)
- **제6조(자치활동장학생 추천)** ①자치활동장학금 수혜대상자가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추천한다.
 - 1.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졸업준비위원회, 동아리연합회, 교지편집위원회의 자치활동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계열(학)부장 또는 학과주임교수와 학생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변경 2022.3.1.)
 - 2.단과대학 학생회와 학부(과) 학생회는 계열(학)부장 또는 학과주임교수와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3.생활관자치위원회는 계열(학)부장 또는 학과주임교수와 생활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②학생자치기구의 장은 간부 명단을 단과대학 교학팀, 자연캠퍼스의 경우 생활관 관리팀을 경유하여 1학기는 3월 20일까지, 2학기는 7월 20일까지 해당캠퍼스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직 간부의 교체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교체명단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장학대상자에서 제외한다.(변경 2005.8.1, 2006.1.5., 2008.3.1, 2022.3.1.)
- 제7조(미디어장학생 추천) 명지미디어센터, 웹진(이하 "미디어기관"이라 한다) 소속의 미디어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계열(학)부장 또는 학과주임교수와 소속장(웹진 기자는 "전산정보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변경 2005.1.11, 2006.1.5., 2008.3.1)
- 제8조(체육특기자 추천) 체육부장은 매 학기말 다음 학기의 체육특기장학금 수혜대상자를 학생 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변경 2022.3.1.)
- 제**9조(바둑특기자 추천)** ①(삭제 2020.9.1.)
 - ②바둑학과주임교수는 매 학기말 다음 학기의 바둑특기 장학대상자를 학생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변경 2020.9.1., 2022.3.1.)
- 제10조(장학대상자 교체·정정) 장학대상자로 추천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열(학)부장 또는 학과주임교수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단과대학장을 경유, 학생처장에게 교체 또는 정정을 통보하여야 한다.(변경 2022.3.1.)
 - 1.장학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변경 2007.3.1)
 - 2.장학심사결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제11조(학업성적 동점자 처리) 평균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 학점수, 전공 취득학점수, 학 문기초교양 취득 학점수, 공통교양 취득 학점수, 가계곤란자 순서로 장학대상자를 선정하며,

가계 곤란자의 우선순위는 직전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에 따른다. 단, 학부(과)별 자체 학업성적 동점자 처리기준을 마련한 경우 학생처의 승인을 받아 이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변경 2007.3.1., 2013.3.1., 2020.7.1., 2022.3.1.)

제 4 장 장학생 확정

제12조(장학생의 확정) 학생처장은 단과대학장 및 소속장이 추천한 장학대상자에 대하여 장학생 선정기준, 관련증빙서류, 중복추천 여부 등을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장학생으로 확정한다.(변경 2021.12.1., 2022.3.1.)

제13조(삭제 2004.9.1)

제 5 장 근로장학금

제14조(근로조건) 근로장학금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변경 2006.3.20, 2009.3.1., 2012.3.1., 2016.9.1)

구 분	근로시간	비 고
근로장학금	1일 8시간 이내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하는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적용

- 제15조(준수사항) 근로장학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시간을 정확히 지키며, 조퇴 또는 이석 시에는 소속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 2.모교발전에 일익을 맡고 있다는 궁지와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변경 2009.3.1)
 - 3.부당한 업무지시나 처우에 대하여 학생처장에게 그 사실을 탄원할 수 있다.(변경 2009.3.1., 2022.3.1.)
 - 4.(삭제 2009.3.1)
 - 5.(삭제 2009.3.1.)
- 제16조(근무확인서 제출) ①소속장은 근로장학생의 근무기간중 제15조의 준수여부에 대한 [별표6]근로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09.3.1, 2022.3.1.)
 - ②확인서를 접수한 학생처장은 확인서에 의하여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변경 2009.3.1, 2022.3.1.)

제 6 장 대여장학금

제17조 (조 삭제 2021.6.1.)

제18조 (조 삭제 2021.6.1.)

제19조 (조 삭제 2021.6.1.)

제20조 (조 삭제 2021.6.1.)

제21조 (조 삭제 2021.6.1.)

제22조 (조 삭제 2021.6.1.)

제23조 (조 삭제 2021.6.1.)

제24조(삭제 2004.9.1.)

제25조(상화방법) 대여장학금의 상화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기 대여금

가.연이율 : 무이자

나.상환기간 : 대여 월 익월부터 1년(12개월)

다.상환방법 : 매월 말일까지 지정된 금융계좌에 무통장입금으로 분할 상환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전액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다.

2.장기 대여금

가.연이율 : 무이자

나.상환기간 : 졸업 후 1년(12개월) 이내

다.상환방법 : 졸업일자의 익월로부터 1년(12개월) 이내에 분할 상환한다. 다만, 본인이 원

할 경우에는 전액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다.

제26조(상환미이행 조치) 대여장학금의 수혜자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 증명서 발급을 중지하고, 보호자에게 상환을 촉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변경 2021.6.1.)

제7장 세계화장학금 및 학술활동장려장학금 (변경 2010.3.1., 2020.9.1.)

제27조(실적 인정기간)(변경 2020.9.1.) 세계화장학금, 학술활동장려장학금의 실적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다.(변경 2010.3.1.,2020.9.1.)

1.신입생(특기자 전형 입학자에 한함) : 입학 학기 전 4학기 이내의 실적 (변경 2020.9.1.)

2.휴학생 : 복학 학기 전 2학기 이내의 실적 (다만, 군입대 기간은 제외) (변경 2020.9.1.)

3.재학생 : 직전 학기의 실적 (신설 2020.9.1.)

4.인정기간의 학기 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0.9.1.)

가. 1학기 : 3.1. ~ 8.31.

나. 2학기 : 9.1. ~ 2.28.(또는29)

제28조(대회 인정범위) 학술활동장려장학금의 대회 인정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29조(수혜기간 제한) ①세계화장학금 1종은 재학 중 1회를 초과하여 수혜 받을 수 없다. ②학술활동장려장학금은 매학기 1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신설 2016.9.1.)

제 8 장 보 칙

제30조(기타사항) 장학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중복수혜 장학금 중 등록금 초과부분은 학업장려금으로 지급하고, 휴·복학으로 인한 선납등록금 차액은 학업보조비로 지급할 수 있다.(변경 2012.4.1)

	부	칙
이 내규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5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
이 내규는 200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디	부 ·.	칙
이 내규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	칙
이 내규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디	 부	칙
이 내규는 200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1
이 내규는 200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디	•	칙
		칙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최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최

이 내규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14년 8월 31일 이전에 입학한 관동대학교 교직원 및 직계자녀에게는 종전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개정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 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사회진출지원장학금 개정내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이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이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이 내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이 내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이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별표1) 교내장학금 수혜자격 기준(변경 2005.5.11, 2005.11.1, 2006.1.5, 2006.3.20, 2007.3.1, 2008.3.1, 2008.7.1, 2008.9.1, 2009.3.1, 2009.11.2, 2009.12.1, 2010.3.1, 2010.9.1, 2011.3.1, 2011.6.1, 2011.9.1, 2012.3.1, 2012.4.1, 2012.9.1, 2013.3.1, 2014.9.1, 2014.11.1, 2015.3.1, 2016.9.1, 2016.11.1, 2016.12.1, 2017.9.1, 2018.3.1, 2018.6.1, 2019.7.1, 2020.3.1, 2020.9.1, 2020.11.1, 2021.3.1, 2021.6.1, 2021.9.1, 2021.12.1, 2022.3.1, 2022.6.1, 2023.3.1, 2023.6.1)

설립자 경기 인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14 3.5 16개 학기) 18학		,	0.1., 2023.3.1., 2023.0.1.)	직전학기	직전학기		
점심자 경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진행 14 3.5 10개 하기(건축학부 (계약 등점 최상위자(전) 스텔 1인, 대상자가 미 등록 시 후순위자로 선정) 14 3.5 16개 하기(건축학부 (계약 등급 포함) 15 10 10 10 10 10 10 10	연번	장학종별	수혜자격 기준				추천자
설립자 강하금 (*) 15		. , . –	, , , , =				
합니다 상하는 (*) 등록 시 후순위자로 선정) (제항자 마 비하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등록 기 선택 (인학금 포함) 등록 기 일반전형(준함) 최조합격자로 전형 참 최상위자(백파스발 1인) (2수시 일반전형(준함) 최조합격자로 모집 반위별 신형 충경 최상위자 중 입학시청 관위원회의 심의・추권을 받은 자(캠퍼스밸 1인) (3세시 및 추가 일반전형(주항) 최초합격자로 모집 반위별 건형 충경 최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파대학별 1인) (2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조합격자로 모집 반위별 건형 충경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판위원회의 심의・추권을 받은 사(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파대학별 1인) (3세시 및 추가 일반전형(주항) 최초합격자로 모집 반위별 건형 충경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판위원회의 심의・추권을 받은 사(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파대학별 1인) (3세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가장 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제외) (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입학처장
1 (*) 등록 시 후순위자로 선정)							
(인학금 포함) 1중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최초합격자로 전형 충점 최상위자(에코스텔 1인) ②수시 일반전형(조함) 최초합격자로 모집 단위번 전형 충점 최상위자(제크스텔 1인) ③수시 일반전형(조함) 최초합격자로 모집 단위번 전형 충점 최상위자 중 입하사정 반위원회의 십의 · 추천을 받은 자(엔피스텔 1인) ③경시 및 추가 일반전형(구등) 최초합격자 중 전형 충절 최상위자(다만, 대상가가 상위 장학에 해당된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 대학별 1인, 예술체육대학 제의) ②수시 일반전형(종함) 최초합격자로 모집 단위별 전형 충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판위원회의 십의 · 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된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예술체육 대학 제의) 성적수수 강학급 (*) 2 ***********************************	1				, , .		
1종 () 수시 일반전형(교과) 최초합격자로 전형 중점 최상위자(덴퍼스발 1인)		(*)			" 1. 1/		
(계약수 일반전형(교과) 최조합격자로 전형 충점 최상위자(명의 별 1인)			1좆	14	3.5		입학처장
종점 최상위자(캠피스별 1인) (2)수시 일반전형(중합) 최초합격자로 모집 단위별 진형 충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판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캠피스별 1인) (3)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조합격자 중 전형 충점 해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예술제육대학 제외) (2)수시 일반전형(조학) 최초합격자로 모집 단위별 전형 충점 최상위자(단반,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예술제육 산위사기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예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자연 충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산위자 선위상 학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4)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충점 해상위자(다반,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전화별/단과대학별 1인) (4)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충점 하상위자(다반,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선회별/단과대학별 모집인 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2)주시 일반전형(조학) 최초합격자로 모집 단위별 전형 충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판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화대학별 모집인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3)정시 일반전형(조기) 최초합격자로 모집 단위별 전형 충점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예술			- 3	11			H 1/1 0
(임학금 포함) (인학금 포함) (기수시 일반전형(교과) 최초합격자 중 전형 중점 최상위자(도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병 1인, 예술체육 대상 제외) (인학금 제외) (기수시 일반전형(수등) 전형 총점 최상위자 (대안,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병 1인) (기상지 및 주가 일반전형(수등) 최초합격자 (대안,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병 1인) (기상지 및 주가 일반전형(수등) 최초합격자 (대안,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전과대학병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인수시 일반전형(조함) 최초합격자로 모집 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점 관위원회의 실위・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병 모집인원의 2%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인학금 제외) (임학금 포함) (임학금 포함) (임학금 포함) (임학금 제외)							
만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캠페스 별 1인) ③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 자로 전형 총점 백분위 환산병균이 95이 상인 자 2종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최초합격자 중 전 형 총점 최상위사(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 하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파 대학별 1인, 예술체육대학 계외) ②숙시 일반전형(출합) 최초합격자로 모집 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 위자로 선정) (단파대학별 1인) 예술체육 대학 제외) 성적우수 장학급 (*) ①주시 일반전형(수능) 전형 총점 최상위 자로 선정) (단파대학별 1인) ④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 자로 전형 총점 배분위 환산평균이 93이 상인 자 3종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 자로 전형 (전화별/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②수시 일반전형(충합) 최초합격자로 모집 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 위자로 선정) (단화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경시 일반전형(성기)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면, 최상위자가 상위 장 학에 해당될 경우 후상위자로 전형 총점 최성위자(다면, 재상위자가 상위 장 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총점 최성위자(다면, 채상위자가 상위 장 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총점 최성위자(다면, 채상위자가 상위 장 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1 11 4 17		
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연퍼스 별 1인) 3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 자로 전형 충점 백분위 환산평균이 95이상인 자 2종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최초합격자 중 전형 충점 최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 대학별 1인, 에슬체육대학 제의)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충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에출체육대학 제의) ③정시 일반전형(수능) 전형 충점 최상위자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예정세육대학 제의) 4인 가장 3중 ①수시 일반전형(수능) 전형 충점 최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전화대학별 1인) (최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충점 배분위 환산평균이 93이상인 가 3중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충점 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전형대당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3수시 인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충점 최상위자 중 입하사정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건의 전형 경우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충점 최성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충점 최성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중점 최성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충점 최성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충점 최성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충점 최성위자(다만, 최상위자)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충점 최성위자(단만, 최상위자)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충점 최성위자(단만, 최상위자)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충점 최성위자(다만, 최상위자)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충점 최성위자(다만, 최상위자)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충점 최성위자(단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등점 최성위자(단만, 최상위자)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등점 함성위자(단만, 최상위자다)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충점 취상위자(단면, 최상위자)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충점 취상위자(단면, 최상위자)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충점 취상위자(단면, 최상위자)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 상위 장학에 하는 원론 전혀 관계 전혀 관계 원론 전혀 관계 관계 관계 원론 전혀 관계							
별 1인) ③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 자로 전형 총점 백분위 환산평균이 95이 상인 자 2종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최초합격자 중 전 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예출제육대학 제외)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 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④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백분위 환산평균이 93이 상인 자 3종 ①수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백분위 환산평균이 93이 상인 자 3종 ①수시 일반전형(등합)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생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전형별/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 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전형별/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정시 일반전형(증합) 최초합격자로 모집 단위별 전형 총집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전한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총점 화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된 경우 차상위자라 상위 장학에 해당된 경우 차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된 경우 차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된 경우 차상위자 상위자 상위자 상위자 상위 장학에 해당된 경우 차상위자 상위자 상위 장학에 해당된 경우 차상위자 상위자 상위 장학에 해당된 경우 차상위자 상위 장학에 생기되었다면 전혀							
3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 자로 전형 총점 백분위 환산평균이 95이 상인 자 2종 (1수시 일반전형(교과) 최초합격자 중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하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단과대학별 1인, 예술체육대학 제외)(2)수시 일반전형(등합)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관위원회의 실의 ·추권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하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단과대학별 1인)(예술체육대학 제외)(3)정시 일반전형(수능)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하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단과대학별 1인)(예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백분위 환산평균이 93이 상인 자 3종 (1)수시 일반전형(교과), 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하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전라마대학별 1인)(예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하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전라마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합)(2)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관위원회의 실의 ·추권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하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합)(3)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하에 해당될 경우 자상위자로 선정)(예술							
자로 전형 총점 백분위 환산평균이 95이 상인 자 2종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최초합격자 중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예술제육대학 제외)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관위원회의 실의·추원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예술제육대학 제외) ③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연합 총점 최상위자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④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백분위 환산평균이 93이상인 자 3종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선정 총점 백분위 환산평균이 93이상인 자 3종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선형 총점 생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전형별/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관위원회의 실의·추원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총점 최상위자(다만, 점상위자)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상인 자 2종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최초합격자 중 전 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하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예술체육대학 제외) ②수시 일반전형(등함)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관위원회의 실위·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예술체육대학 제외) 성적우수 강하급(*) (*) (*) (*) (*) (*) (*) (*) (*) (*)							
2종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최초합격자 중 전형 충점 최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하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예술체육대학 제외)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 단위별 전형 충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판위원회의 실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하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예술체육대학 제외) ③정시 일반전형(주능) 전형 충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전하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예술체육 대학 제외) ④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충점 백분위 환산평균이 93이상인 자 3종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충점 생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하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전형별)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②수시 일반전형(중합) 최초합격자로 모집 단위별 전형 충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관위원회의 실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하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경시 일반전형(중합) 최초합격자로 전형 충점 최상위자(다만, 제상자가 상위 장하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경시 일반전형(생길기) 최초합격자로 전형 충점 최상위자(다만, 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만관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경시 일반전형(생길기) 최초합격자로 전형 충점 최상위자(다만, 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							
(계학증 경 최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 하이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 대학별 1인, 예술체육대학 제외) (2) 수시 일반전형(등합) 최초합격자로 모집 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예술체육 대학 제외) (3) 정시 일반전형(수능)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3) 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배분위 환산평균이 93이상인 자 3종 (1) 수시 일반전형(교과), 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행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전형별/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2) 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3) 정시 일반전형(순기)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3) 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						0.71 (2) 72 (2) 73 (2)	
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하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 대학별 1인, 예술체육대학 제외) (2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 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판위원회의 십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예술체육 대학 제외) (3정시 일반전형(수능) 전형 총점 최상위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수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4)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백분위 환산평균이 93이상인 자 3종 (1)수시 일반전형(교과), 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생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전형별/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2)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 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판위원회의 십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3정시 일반전형(살기)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해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만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_ 3	14			
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 대학별 1인, 예술세육대학 제외) (2)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 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예술체육 대학 제외) 성적우수 장학금 (*) (4)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4)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4)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 참 생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전형법/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2)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 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3)정시 일반전형(성인기)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성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					, , •	1 ' ' ' '	
대학별 1인, 예술체육대학 제외)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 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 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예술체육 대학 제외) ③정시 일반전형(수능) 전형 총점 최상위 사(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④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 자로 전형 총점 백분위 환산평균이 93이 상인 자 3종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 자로 전형 총점 백분위 환산평균이 93이 상인 자 3종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 위자로 선정) (전형별/단과대학별 모집인 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 로 함)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 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 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					매학기)		
2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 단위별 건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판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 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예술체육 대학 제외) 경정시 일반전형(수능) 전형 총점 최상위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④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 자로 전형 총점 백분위 환산평균이 93이 상인 자 3종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해당될 경우 후순 위자로 선정) (전형별/단과대학별 모집인 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 로 함)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 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 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화순 확게 최당된경(인기)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						(입학금 제외)	
만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 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예술체육 대학 제외) 정적우수 장학금 (*) 원정서 및 추가 원반전형(수능) 최초합격 자로 전형 총점 백분위 환산평균이 93이 상인 자 3종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 자로 전형 총점 방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 위자로 선정) (전형별/단과대학별 모집인 원의 2% 이대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 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 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 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화원 기 등 하는 기를 다 되었다.							
판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 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예술체육 대학 제외) 정적우수 장학금 (*) (*) (*) (*) (*) (*) (*) (*)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 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예술체육 대학 제외) ③정시 일반전형(수능) 전형 총점 최상위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4)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백분위 환산평균이 93이상인 자 3종 (1)수시 일반전형(교과), 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전형별/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전형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							
인임생 성적우수 강학급 (*) 일반전형(수능) 전형 총점 최상위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④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백분위 환산평균이 93이 상인 자 3종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전형별/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총점 청상위자 중 입학사정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만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			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2 선입생 성적우수 강학급 (*) (*) (*) 전형 충점 최상위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4) 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충점 백분위 환산평균이 93이 상인 자 3종 (1) 수시 일반전형(교과), 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충점 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전형별/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2) 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충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3) 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충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							
전입성 성적우수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④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백분위 환산평균이 93이상인 자 3종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전형별/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입학사정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예술체육				
성적우수 강학금 (*) (*) (*) (*) (*) (*) (*) (*)		신입생	대학 제외)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상약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④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백분위 환산평균이 93이상인 자 3종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전형별/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		선전우수	③정시 일반전형(수능) 전형 총점 최상위				
(*) 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④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 자로 전형 총점 백분위 환산평균이 93이 상인 자 3종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전형별/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함)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함)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	2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				
(실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 자로 전형 총점 백분위 환산평균이 93이 상인 자 3종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전형별/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함)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함)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			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상인 자 3종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전형별/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		()	④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				
3종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전형별/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함)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함)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			자로 전형 총점 백분위 환산평균이 93이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정시 일반전형(수 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전형별/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함)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함)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			상인 자				
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전형별/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			3종			3종:입학 학기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 위자로 선정) (전형별/단과대학별 모집인 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 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 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정시 일반전형(수			등록금 전액	
위자로 선정) (전형별/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			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상위자(다만,			(입학금 제외)	
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				
로 함)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 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 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			위자로 선정) (전형별/단과대학별 모집인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 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 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 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			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				
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 위자로 선정)(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 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예술			로 함)				
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 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 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 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 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			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 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 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			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 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 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 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 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							
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							
체육대학 모집단위별 1인)							

주 : (*)은 입학전형에 의해 수혜받을 수 있는 장학금임.

			직전학기	직전학기		
연번	장학종별	수혜자격 기준	최소	최소	지급액	추천자
			취득학점	평균평점		
		1종:우리 대학교 발전과 명예를 드높이는	없음	2.0	1종:등록금 전액	단과
		데 공로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대학장,
		2종:재해를 입은 재학생으로서 거주지	01.0	01.0	0.7.0.000.000.00	실·처장
	총장특별	관공서의 확인을 받은 자	없음	없음	2종:2,000,000원	,
3	장학금	3종:가계곤란자 또는 품행이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없음	어 o	9조·9조 레디크에 미미	미래교육 원장,
		도심이 되는 사 4종: 시간제 등록생 중 미래교육원장이 추			3종:2종 해당금액 미만 4종:해당학기 신청학점	전성, 부서장
		천한 자	以口	以口	43.에 5력기 건경력점 등록금 35%	7/1/8
		(교 현 기			(만원미만 절사)	
		학부(과), 전공별 학년의 직전학기 평균평점	14	3.0	1종:등록금 전액	단과
		석차가 배정순위 내에 있는 자. 다만, 배정			2종:등록금 50%	대학장
		순위는 입학정원에 비례하여 총장이 결정			(만원미만 절사)	
$\begin{vmatrix} 1 & 1 \end{vmatrix}$	백마	하고, 학부(과), 전공별 재학인원이 15인 이				
4	장학금	하일 경우에는 백마 1종에 한하여 1명을				
		배정하며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배정하지				
		않 <u>음</u> .				
		기계고기가 조세기 묘비되어 키그 취보				rl -1
		가계곤란자 중에서 모범적인 자로 학부 (과) 주임교수 및 단과대학장 또는 부서장				단과 대학장,
	п нј	(파) 구립교구 및 선택내약경 또는 구시경 추천을 받은 자				내학생, 부서장
5	모범 장학금	구선을 본단 시 1종	14	3.0	 1종:등록금 30%	7/1/8
	70 4 12		14	0.0	(만원미만 절사)	
		2종	14	2.0	2종:1,000,000원	
		·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자치기구 및 부속기	12	2.5	1종:등록금 전액	학생처장
		관의 제 규정에 따라 선출·임명된 자로			2종:등록금 70%	,
	자치	학부(과) 주임교수 또는 부서장이 추천한			(만원미만 절사)	부서장
6	활동	자			3종:1,500,000원	
	장학금	다만, 종별 적용대상은 (별표4)에 의함.			4종:1,000,000원	
					5종: 700,000원	
					6종: 600,000원	
		1종: 공무원 5급, 변리사, 회계사	12	2.5	1종:합격 당해학기부터 졸	고시원장
		시험의 2차 합격자	10	0.5	업 (2참기시키) 무르그기에	
		2종: 공무원 5급, 변리사, 회계사	12	2.5	(8학기이하)까지 등록금전액	
	,ı	시험의 1차 합격자 및 3종에 해당 하는 시험의 2차 합격자			2종:2개 학기 등록금 전액	
7	고시 자하그	이는 시험의 2차 합격차 3종: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12	2.5		
	장학금	공무원 7급 이상 시험의 1차 합격자	12	2.3	3종:2개 학기 등록금 50%	
		다만, 1~3종 대상자는 재학중이어야 함.			(만원미만 절사)	
		, , , , , , , , , , , , , , , , , , , ,				
		l .				

			직전학기			
연번	장학종별	수혜자격 기준	<u>최소</u> 취득학점	<u>최소</u> 평균평점	지급액	추천자
8	보훈 장학금	1종:국가로부터 보훈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 받은 자 2종:1종 해당자의 직계자녀와 북한이탈 주민 및 그 직계자녀. 다만, 북한이탈 주 민 및 그 직계자녀는 입학일 기준 만 35	없음 없음	없음 1.88	1종: 수료 또는 졸업할 때 까지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2종:8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 국고· 교비 각 50% 부담)	단과 대학장, 입학처장, 학생처장
0	(*)	세 미만이어야 하고 8개 학기 까지만 지원. 3종:장기복무제대자로서 보훈처에서 인정한 제대군인교육보호대상자다만, 1종~3종 대상자는 대학수업료 등면제대상자, 교육보호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없음	없음	3종:8개 학기 등록금 50% (입학금 포함/국고 부담/만원미만 절사)	
9	체육특기 장학금 (*)	체육부에서 선수로 활동하며 체육부관리 위원회에서 장학대상자로 선정된 자(입학 정원의 70%)	12	2.0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체육부장
10	외국인 장학금 (*)	외국인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교류처에서 TOPIK 급수 및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매 학기 장학대상자를 선정하며, 별도의 협정 또 는 총장 특별 추천이 있는 경우, 그에 의 거하여 지급. 다만, 장학금 지급액에서 외국인 보험료 를 차감함	12	2.5	1종: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2종:등록금 70% (입학금 제외/ 만원미만 절사) 3종:등록금 50% (입학금 제외/ 만원미만 절사) 4종:등록금 40% (입학금 제외/ 만원미만 절사) 5종:등록금 20% (입학금 제외/ 만원미만 절사)	국제교류 처장
11	복 지	1종 ①우리 대학교를 포함한 학교법인 명지학원 산하 대학(교) 교직원 및 직계자녀②학교법인 명지학원 임직원 및 직계자녀③우리 대학교에서 10년 이상 근속하고,법인 산하기관으로 전출한 직원 및 직계자녀④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퇴직(파면 및 해임 제외) 또는 면직한 교직원의 직계자녀⑤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 사망 또는 이에 준한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 당시재학 중인 직계자녀⑥우리 대학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계약직원 제외) 2종학교법인 명지학원 산하 각급 학교와 수익사업체 및 명지 새마을금고,명지원,명지대학교 교회,배움의 교회 재직자와직계자녀	12	2.0	1종:8개 학기(건축학부 10개 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2종:8개 학기(건축학부 10개 학기) 등록금 50%(입학금 제외/ 만원미만 절사)	입학처장, 학생처장, 부서장

주 : (*)은 입학전형에 의해 수혜받을 수 있는 장학금임.

			직전학기	직전학기		
연번	장학종별	수혜자격 기준	최소	최소	지급액	추천자
			취득학점	평균평점		
		1종:기초생활수급자이며 소년소녀가장으	12	2.0	1종: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학생처장
		로서 매 학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			(입학금 포함)	
		거 읍, 면, 동장이 확인한 자				
		2종			2종	
		①본인 또는 부모 중 1인이 장애인복지	12	2.0	①8개 학기(건축학부	
		법 제29조에 의해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			10개 학기) 등록금 전액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민기초생활			(입학금 제외)	
		보장법에 의거 읍, 면, 동장이 확인한 자			②8개 학기(건축학부	
		②본인 또는 부모 중 1인이 장애인복지			10개 학기) 등록금 70%	
		법 제29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12	2.0	(입학금 제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만원미만 절사)	
		에 의거 읍, 면, 동장이 확인한 자			③해당학기 등록금 50%	
		③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입학금 제외/	
		법에 의거 읍, 면, 동장이 확인한 자	12	2.0	만원미만 절사)	
		④③항 대상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④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4.0이상인 자	12	4.0	(입학금 제외)	
	명지사랑	⑤③항 대상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10	0.5	⑤해당학기 등록금 70%	
12	장학금	3.5이상인 자	12	3.5	(입학금 제외/	
	(*)	0조 기계시[H 기계 제00 국제 시계 기계시]			만원미만 절사)	
		3종: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장애인			0.7	
		으로 등록된 자			3종	
		 중증 장애학생 경증 장애학생 	어ㅇ	없음	①1,000,000원	
		(설 경우 경제력/8	없음 없음	없음	① 500,000원	
		4종: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아래의 학자금	以 百	以口	② 500,000년	
		지원구간에 해당되는 자			4종:매학년도 예산범위내	
		(1)학자금 지원구간 1구간			별도 책정 금액	
		②학자금 지원구간 2구간	12	2.0	57 40 64	
		③학자금 지원구간 차상위계층	12	2.0		
			12	2.0		
		 5종:신(편)입생의 가족(부모, 자녀, 배우				
		자, 형제, 자매) 중 재적생이 있는 자			5종:500,000원	
		다만, 3종 대상자 중 직전학기 취득학점				
		이 없는 경우 수혜대상에서 제외. 4종 대				
		상자 장학금액은 매학기 예산범위 안에				
		서 총장이 정함.				
10	근로	교내 각 부서에서 시간제로 행정지원 등	없음	없음	최저임금법 제3조 및 제6	부서장
13	장학금	을 보조하는 자			조에 의거 지급	
	الم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14	2.0	장기:등록금 전액	단과
14	대여				단기:등록금 범위내	대학장
	장학금				(만원미만 절사)	

주 : (*)은 입학전형에 의해 수혜받을 수 있는 장학금임.

			직전학기	직전학기		
연번	장학종별	수혜자격 기준	최소	최소	지급액	추천자
			취득학점	평균평점		
		교내 미디어기관(명지미디어센터, 웹진)에	12	2.5	1종:등록금 전액	전산정보
		서 정기자로 임명된 자. 다만,			2종:등록금 80%	원장,
		지급액은 (별표4)에 의함.			(만원미만 절사)	명지
	미디어				3종:등록금 60%	미디어
15	장학금				(만원미만 절사)	센터장
	070				4종:1,200,000원	
					5종: 900,000원	
					6종: 800,000원	
			_	_	7종: 650,000원	
		1종: 한국기원에서 현재 프로기사로 활약 중	12	1.5	1종:8개 학기 등록금 전액	단과
		인 자(재학 중 프로기사가 된 경우는 다음			(입학금 포함)	대학장,
		학기부터 지급)				입학처장
		2종: 한국기원, 대한바둑협회, 지자체 등이	12	1.5	2종:1개 학기 등록금 50%	
16		주최하는 전국규모 대회의 최강전 또는			(입학금 제외/만원	
	(*)	국제대회의 최강전에서 4강 이내 입상자			미만 절사)	
		다만, 1~2종 대상자는 바둑학과 재학생이				
		어야 하며 2종의 경우 재학중 1회				
		지급.	1.		1 7 1 000 000 4)	
		1종	14	2.5	1종:1,000,000원	단과
		. 토플(IBT) 83점 이상(CBT 220점 이상)				대학장
		영어영문학과 IBT 90점 이상(CBT				
		233점 이상)				
		. IELTS 6.5 이상				
		영어영문학과 IELTS 7.0 이상				
		. 토익 850점(영어영문학과 900점)이상				
		. New TEPS 336점(영어영문학과 370점)				
		이상				
		. JLPT일본어능력시험 N1급 이상				
		(일본국제교류기금 주관)				
17	세계화	. JPT일본어능력시험 800점 이상				
-	장학금	. 중국어HSK(한어수평고시) 5급 이상				
		(중어중문학과 재학생 필기고사 6급이고				
		구술고사 고급, 신입생 필기고사 6급)				
		. 토익 Speaking 160 이상				
		. OPIC IH 이상				
		2종:방목기초교육대학 주관 모의토익	14	2.5	2종:	
		성적우수자				
		① 최우수상			① 300,000원	
		② 우수상			② 200,000원	
		③ 장려상			③ 100,000원	
		다만, 1~2종 대상자는 재학중이어야 하며				
		1종의 경우 재학중 1회 지급.				

주 : (*)은 입학전형에 의해 수혜받을 수 있는 장학금임.

			직전학기	직전학기		
연번	장학종별	수혜자격 기준	최소	최소	지급액	추천자
			·	평균평점		. – .
		1종: (별표 3)에서 정한 문학상 수상 및 문	14	2.5	(신입생)	단과
		예지에 등단한 자와 학술, 음악, 미술, 정			1종:입학 학기 등록금 전액	대학장,
	치스치드	보 및 체육분야 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			(입학금 제외)	입학처장,
	학술활동	한 자			2종:입학 학기 등록금 50%	학생처장
18	장려 기치그	2종: 위의 1종 대상자격 외 입상한 자			(입학금 제외/만원	
	장학금 (*)	다만, 단체 및 팀으로 입상하였을 경우에			미만 절사)	
	(")	는 장학금액을 해당 인원수에 비례하여			(재학생)	
		균등분할하여 지급하고 1~2종 대상자는			1종:1,000,000원	
		재학중이어야 함.			2종: 500,000원	
	뮤지컬	뮤지컬특기자로 입학한 자			입학 학기 등록금	단과
19	특기장				(입학금 포함) 전액	대학장,
	학금(*)					입학처장
_		기독교 정신 설립구현을 위한 교목실 신앙교육	14	2.5	500,000원	교목실장
20		과 사역을 돕고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며 모				
	장학금	범적인 자 해외 현장실습자, 교환학생, 방문학생, 어	14	2.5	최대 4,500,000원	rl =1
		애커 선정설급자, 교환학정, 정도학생, 역학연수 및 교육연수 등에 선발된 자	14	2.5	좌대 4,500,000권	단과 대학장,
		의한구 및 교육한구 중에 신발된 사				교육지원
						교육시원 처장,
21	연수					시경, 학생처장,
21	장학금					역생시생, 취창업지
						원처장,
						국제교류
						처장
		1종: 학부(과) 교육 연구업무 보조자로 추	14	3.0	1종:1,000,000원	대학원장,
		천을 받은 자				단과
		2종: 우리 대학교와 현장실습 약정을 체결	14	2.5	2종	대학장,
		한 기업체에서 실습한 3, 4학년 재학생				교육지원
		① 6주 이상 근무한 자			① 500,000원	처장,
		② 4주 이상 근무한 자			② 300,000원	학생처장,
		3종:경력개발지원자(장애,다문화,탈북)	14	2.0	3종:1개 학기 300,000원	부서장
22		4종:4학년에 재학 중이며 IPP형 일학습	없음	없음	4종:최대 3,000,000원	
	지원	병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장학금	5종: 졸업 직전 학기 중 교수의 연구를 보	14	3.0	5종:1,700,000원	
		조하면서 우리 대학교 대학원 및 전문대				
		학원(특수대학원 제외)에 진학하여 계속적				
		인 연구를 수행할 자. 단, 대학원 및 전문				
		대학원 입학전형 합격 후 등록자에게만				
		지급.				
23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직전학기	직전학기		
연번	장학종별	수혜자격 기준	최소	최소	지급액	추천자
		. , , _	•	평균평점		' - '
	군위탁	우리 대학교와 협정에 의한 군위탁 편입	14	2.5	4개 학기 등록금 30%	교육지원
24	장학금	생			(입학금 제외/만원	처장,
	(*)				미만 절사)	입학처장
		특성화고등졸재직자전형으로 입학한자.	14	2.0	등록금 50%	단과
		다만, 학점당 등록자는 제외.			(만원미만 절사)	대학장,
		〈산업체 범위〉				입학처장
	특성화	가.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고등졸	나.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25	재직자	5인(사업주포함)이상 사업체				
	전형	다.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				
	장학금	(창업·자영업자 포함)				
		다만, 당해학기 산업체에 재직 중 이어야 함.				
		우리 대학교 홍보 및 발전에 기여한 단체의	14	2.5		대외협력
		회원으로서 부서장이 추천한 자				홍보위원
		1종:각 단체 회장			1종:최대 1,200,000원	회위원장,
26	명지다움	2종:각 단체 회원			2종:최대 1,000,000원	학생처장,
20	장학금					국제교류
						처장,
						부서장
	그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교내·외 그린캠퍼	14	2.5	1종:최대 1,200,000원	학생처장
27	캠퍼스	스 활동에 적극적인 자			2종:최대 1,000,000원	
"	활동지원				3종:최대 500,000원	
	장학금				=00 000 d)	-1 1 7 . 1
	장애학생		14	2.5	500,000원	장애학생
28	도우미	모범적인 자				지원센터
	장학금	우리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	없음	없음	최대 3,000,000원	<u>장</u> 교육지원
		램	BA LI	l w n		처장,
		' (어학, 멘토링, 컴퓨터, 전공 관련 직무				학생처장,
29	교육훈련	교육, 취업관련 자격증 과정(민간포함)				대학교육
	장학금	등), 대학교육혁신 프로그램 및 국고재				혁신원장,
		정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로 부				부서장
		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글로벌	외국인학생의 학업과 생활에 도움을 주는	14	없음	500,000원	국제교류
30	버디	모범적인 자				처장
	장학금					
		교내・외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 및 창업	14	없음	매학년도 예산범위내	단과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상한 자 또는			별도 책정 금액	대학장,
31		창업교육센터의 지원프로그램(창업동아리				창업교육
	장학금	포함)을 통하여 창업했거나 창업준비중인				센터장,
		자로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부서장

주 : (*)은 입학전형에 의해 수혜받을 수 있는 장학금임.

			직전학기	직전학기		
여배	장학종별	수혜자격 기준	최소	최소	지급액	추천자
" "	0 7 0 2	1 31/21 2 1 2	기고 취득학점		1 1 1 1	1 61
		성인학습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14	2.0	등록금 30%	미래융합
	성인	품행이 모범적인 자. 다만, 학점당 등록자			(만원미만 절사)	대학장,
32	학습자	는 제외				입학처장
"	전형	_ "				1 / / 0
	장학금					
		미래융합대학 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품행	14	2.0		미래융합
	학습	이 모범적인 자. 다만, 학점당 등록자 및			비학위과정 개설 교과목	대학장
33	바우처	입학 후 첫 학기 재학생은 제외.			중 1개 과목 수강(200,000	
	장학금				원 이하) 지원 (재학 중 1	
	0 1 1				회)	
		미래융합대학 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점	14	2.0	200,000원	미래융합
	평생학습	당 등록자 중 정규 4개 학기 이상 등록하			(재학 중 1회)	대학장
34	장려	고 직전학기까지의 이수학점이 총 60학점				
	장학금	이상인 자				
		지원신청서, 취업활동계획서, 진로관련심리	14	없음	매학년도 예산범위내	학생처장
		검사결과지 제출 및 경력개발팀 주관 취			별도 책정 금액	
	취업지원	업프로그램 이수 후 결과제출완료한 자				
35						
	장학금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신설된 계약학과	14	2.0	당해 학기 등록금 30%	산학협력
	2.1.	학생을 대상으로 단과대학을 통해 추천된			미만(만원미만 절사)	단장,
36		학생. 다만, 당해 학기 산업체에 재직 중				단과
	장학금	이어야 함.				대학장,
						미래교육
		연계전공 신청자로 장학금 신청 학기의	14	3.5	10만원(이수 학점당)	원장, 교육지원
		평균평점 3.5이상 이며 동일 학기 연계전			(연계전공 교육과정 중 제1	
	융합	공 교과목(제1전공[주전공] 포함)의 평균		3.8)	전공[주전공]교과목을 제외	, 0
37	인재	평점이 3.8이상인 자. 다만, 연계전공 의		0.07	한 연계전공 교육과정 교	
31	육성	무이수자는 장학수혜 대상에서 제외.			과목 이수학점 수에 대하	
	장학금	1 1 1 2 1 C			여 총 누계 최대 360만원	
					이내에서 지원)	
		학생역량강화를 위하여 MyiCap에 기재된	14	없음	매학년도 예산범위내	학생처장,
	명지	비교과 또는 봉사 마일리지를 취득한 자		и и	별도 책정 금액	대학교육
38	마일리지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며 세부사항			10 11	혁신원장
	장학금	은 별도로 정함.				1660
		ㄴ ㄹㅗㅗ 이번,				

(별표2) 교외장학생 선정기준(변경 2004.3.2)

연번	장학종별	수혜자격
1	한국학술진흥재단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2	정수장학회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3	신라문화장학재단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4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5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6	한국통신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7	삼송장학회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8	운경재단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9	소청장학재단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10	노엽문화재단장학금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11	보훈장학금	국가보훈 대상자의 직계자녀와 북한이탈 주민 및 그 직계자녀
12	육군장학생장학금	졸업 후 육군장교 지망자
13	해군장학생장학금	졸업 후 해군장교 지망자
14	공군조종장학생장학금	졸업 후 공군장교 지망자
15	명지대학교총동문회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16	해암학술장학재단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17	한국화학공학회장학금	화학공학과에 재학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18	기탁(생활관)장학금	생활관 사생으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타의 모범인 자

(별표3) 학술활동장려장학금 대회실적기준(변경 2010.3.1., 2012.3.1., 2014.9.1., 2020.9.1.)

	구분	지정대회	비고
	문학	□우리대학교에서 주최한 전국대회 □대통령, 국무총리 및 각 부처장관이 주최한 전국대회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주요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 □다음 재단에서 주최한 전국대회 ▶문학동네 ▶대산문화재단 ▶문예중앙 ▶대교문화재단 ▶문학사상 ▶창작과 비평 ▶월간문학 ▶현대문학 ▶문학과 사회 ▶실천문학 ▶세계의 문학 ▶자음과 모음 ▶현대시학 ▶현대시	
학	예술 및 건축	□우리대학교가 주최한 전국대회 □대통령, 국무총리 및 각 부처장관이 주최한 전국대회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주요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	
· 술 활 동 장 려 장 학 규	체육	□우리대학교가 주최한 전국대회 □대통령, 국무총리 및 각 부처장관이 주최한 전국대회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주요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 □한국기원 주최 전국대회 □국제대회 □동·하계 올림픽 □동·하계 아시안게임 □동·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당·하계 전국체육대회 □대한체육회산하 다음 단체 등에서 주최한 전국대회 □대한체육회산하 다음 단체 등에서 주최한 전국대회 □대한축구협회 □대한조정협회 □대한터니스협회 □대한조정협회 □대한당구협회 □대한용트협회 □대한당구협회 □대한양궁협회 □대한학무협회 □대한양궁협회 □대한아마투어복성연맹 □대한가누연맹 □대한아마투어복성연맹 □대한구단등종연맹 □대한사이클연맹 □대한산악연맹 □대한사이클연맹 □대한산악연맹 □대한사이클연맹 □대한사이클연행 □대한사이클연행 □대한사라로협회 □대한사이클연맹 □대한사라로협회 □대한사라도협회	

	구분	지정대회	비고
학 술 활 동 장 려 장 학 금	학 술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회에 2위 이내에 입상한 재학생 가. 국제대회(공모전) 수상자 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주요 언론기관 에서 주최하는 전국규모 대회 수상자 다.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회 주최 대회 수상자 및 국외학술지 논문에 등재된 경우 라. 공기업체(공모전) 수상자 및 국내 100대 기업 주최 대회 수상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발명 또는 특허 관련 대회 2위 이내에 입상한 재학생 가. 발명으로 국제특허를 받은 재학생 나. 발명으로 국내특허를 받은 재학생 장의 추천에 한한다.	
	정 보	정보화 관련 국가기관에서 주최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컴 퓨터 관련 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한 자 다만, 위의 해당하는 자는 소속 단과대학장의 추천에 한 한다.	

(별표4) (신설 2008.7.1, 2009.3.1., 2011.3.1., 2016.9.1)

자치활동, 미디어장학 종별 적용대상 기준

구 분	종별	적용대상
	1종	총학생회장 / 부총학생회장
	2종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 총여학생회장 / 동아리연합회장 / 생활관자치회장
	3종	각 단과대학 부학생회장 / 총여학생부회장 / 동아리연합부회장 / 생활관여학생회장
자치활동 장학금	4종	졸업준비위원장 / 백마응원단장 / 총학생회국장 / 고시반장, 인문도서관자치위원회 회장, 부회장 / 각 학부(과)회장
	5종	생활관자치부회장 / 학군단명예위원장 / 총학생회부장 / 동아리연합회부장 / 각 단과대학 학생회 각 부장 / 생활관자치회 총무, 동장 / 각 학부(과) 부학생회장 /
	6종	총학생회 차장 / 생활관자치회 부동장
	1종	명대신문 편집장
	2종	명대신문 부장/명대방송 실무국장/영자신문 편집장
	3종	웹진 정기자
미디어 장학금	4종	명대방송 부국장
70 H H	5종	명대신문 정기자/명대방송 부장/영자신문 부장
	6종	명대방송 정국원/ 영자신문 정기자
	7종	명대방송 수습국원 / 명대신문 수습기자 / 영자신문 수습기자

(별표5) (신설 2008.7.1, 2011.6.1, 2011.9.1, 삭제 2012.3.1)

근로 확인서

기간 : 20 . . - . . 부서명 :

연번	학부(과)	학번	학년	성명	일수	시간	지급액	은행 및 계좌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계							

위 사람은 20 학년도 제 학기 본 계열, 학부(과)(부서)의 근로 장학생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소 속 장: (인)

(별표7) 융합인재육성장학금 신청서 (신설 2017.9.1.)

결	담 당	팀 장	처장
' ' 已		전결	
재			

융합인재육성장학금 신청서

ı								
	단과대학	학과						
신청자 기본정보	학 년	학번						
, _ 0	성 명	연락처(핸드폰)						
장학금 신청학기		학년도 제 학기						
연계전공명	이수중인 연계전공명을 기재							
	교과목명(1)	학점						
	개설학과명	제1전공(주전공)여부						
장학금 신청학점	교과목명(2)	학점						
2.04 5	개설학과명	제1전공(주전공)여부						
	장학금 신청학점	총 학점						
수혜기준	이번학기 평균평점	이번학기 연계전공 평균평점						
확인	(GPA : 3.5이상)	(GPA : 3.8이상)						
기타	연계전공 관련 정보제공, 만족도 조사 등 교육적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오며 융합인재육성장학금을 신청합니다.								
90								
20								
신청자 (서명/인)								
확인자 ○○○연계전공 주임교수 (서명/인)								
붙 임 성적증명서 1부.								

교육지원처장 귀하